

안산시의회 포상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의안 번호	1896
----------	------

발의년월일 : 2009. 9. .
발 의 자 : 박선희의원 외 인

개정이유

-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된 위원회소속 및 명칭을 동 규정의 조문에 반영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함.

주요골자

-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된 상임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을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등 구체적으로 함 (안 제11조 제2항).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사무국장, 5급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의정담당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①(생략) ② 위원회는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간사, 사무국장, 전문위원으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의회 공적심사위원회)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사무국장, 5급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의정담당으로 한다.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제정 1992.07.18 의회훈령 제121호

개정 1992.10.13 의회훈령 제135호

(일부개정) 1999.04.20 훈령 제 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의정 지원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과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개인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의정 지원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2.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기타 혁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기타 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4. 기타 의회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표창시기)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의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①의회에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간사, 사무국장, 전문위원으로 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9.4.20>

제12조(이중 포상의 금지) 동일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10.13)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4.20)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창문)

년 월 일

안산시의회 의장(직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사문)

년 월 일

안 산 시 의 회 의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안산시의회 의장(직인)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앞면)

성명	(한자원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 (외국인에한함)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공적기간		
공적요지(50자 내외)	공적분야코드					
추천자격	추천순위					
조사자						
소속	지위					
직급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 포상 ·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 수	포상 년월일	포상 종별	포상 기관	피포상자				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	기념품 또는 부상	비 고
				직위 또는 직명	소속 또는 주소	성 별	성 명			

1.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타 기관의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재한다.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17
----------	------

제안년월일 : 2009. 9. 18.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적정하게 수정하고, 조례의 적용범위에 있어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며,
- 설치 및 기능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에 감사담당관을 추가하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을 없애고, 의견청취 등에서의 문구 일부를 삭제하는 등 수정함.

2. 주 요 내 용

- 목적 규정 내용 일부를 적정하게 수정함(안 제1조)
- 적용범위에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및 민원사항에 관한 법령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함(안 제4조제1호 내지 동조 제2호)

-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에 감사담당관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에서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을 없애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 심의 등에서 위원장이 심의·의결 결과를 자체 없이 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도록 한 부분 중 ‘자체 없이’ 문구를 삭제 함(안 제9조제3항)
- 의견 청취 등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중 ‘조사할 수 있으며’라는 문구를 삭제 함(안 제10조제1항)
- 사무처리 등에서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 없이 담당부서에서 민원사무처리하도록 한 부분 중 ‘자체 없이’ 문구를 삭제 함(안 제11조제1항)